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의안번호	제103호
------	-------

<p>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3. 6. 8.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03호
----------	-------

제출연월일 : 2023. 6. 8.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산림공원과장

1. 제안이유

- 2022년 감사원 공공앱 구축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산림청에서 송부한 참고조례안을 반영하여 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의 공정성 강화와 이용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 지역주민·산림복지바우처 우선예약제 운영,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를 통해 산림복지 취약계층의 휴양림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 휴양림 예약신청 및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개정(안 제5조)
- 논산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숙박요금 감면 비율 개정
(안 제8조 제3항제6호, 별표2)
-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관리 규정 신설
 - 1) 우선예약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2) 매매·교환 등 금지 조항 신설(안 제5조의3)
 - 3) 관리자 예약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기획감사실-4946(2023.05.16.)호]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복지정책과-16407(2023.05.23.)호]
- 3) 규제심사 : 규제대상 아님 [예산실-5328(2023.05.03.)호]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 5. 3. ~ 2023. 5. 23. (21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산림자원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를 “7세 이상 12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만 20세 이상 만 64세 이하”를 “20세 이상 64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청소년 및 군인“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부사관 이하의 사람(사회복무요원 등 포함)을 말한다.

11. “숲나들e”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운영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인 산림휴양통합플랫폼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방법)”을“(예약신청 및 예약성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해야 성립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우선예약)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객실의 10분의 3 이상을 우선예약 대상객실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예약 대상객실은 논산시민과 산림복지진흥원에서 발급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만 우선으로 예약할 수 있다.

제5조의3(매매·교환 등 금지)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7조제3호 중 “만 6세”를 “6세”로, “만 65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유치원·초등·중·고등학생 수련활동시:”를 “유치원·초·중·고 학생 수련 활동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명

에시민증”을 “명예시민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30퍼센트”를 “4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2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시 자”를 각각 “제시자”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관리자 예약)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비 숙박시설 외에도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5조 중 “사용료”를 “시설사용료”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호 중 “30%감면”을 “40%감면”으로 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산 림 공 원 과 장			김	종 진
	산 림 복 지 팀 장			박	병 석
	담 당 자			백 승 희 (7 4 6 - 6 1 5 2)	

【별표 2】

시설사용요금표 (제4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사용시간	요금		비고
				성수기	비수기	
주차료	소중형자동차 (승용, 봉고차, 1톤이하 화물트럭)		1대/ 1일	2,000		시설물 이용자는 주차료 무료
	대형차량 (버스, 화물트럭)			4,000		
숲속의집 (일반)	26㎡(4인용)		1동/ 1일	75,000	50,000	※ 사용시간 당일 15:00 ~ 익일 오전 12:00
	29㎡(4인용)			75,000	50,000	
	36㎡(6인용)			120,000	80,000	
	60㎡(10인용)			160,000	100,000	
	74㎡(12인용)			200,000	140,000	
숲속의집 (프리미엄)	106㎡(10인용)		1동/ 1일	250,000	180,000	※ 정원 초과시 1인당 5,000원 추가징수
	150㎡(15인용)			300,000	230,000	
숲속휴양관	34㎡(5인용)			90,000	60,000	
다용도실	20인실	4시간	1실	50,000		
		8시간		100,000		
세미나실	50인실	4시간		100,000		
		8시간		200,000		
야외무대	공연장포함		1조/ 1일	50,000		
클럽핑장	4인용		1동/ 1일	130,000	100,000	※ 사용시간 당일 15:00 ~ 익일 오전 12:00
숙박요금 감면 (숲속의집, 숲속휴양관, 클럽핑장)	논산시민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30퍼센트 할인 (성수기 20퍼센트 할인)		
	사이버 논산시민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20퍼센트 할인 (성수기 15퍼센트 할인)		
	자매결연도시·우호교류도시주 민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20퍼센트 할인 (성수기 15퍼센트 할인)		
	관내 유치원·초등·중·고등학 생 수련활동			숙박료의 30퍼센트 할인 (성수기 20퍼센트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30퍼센트 할인 (성수기 20퍼센트 할인)		
	다자녀가정 구성원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30퍼센트 할인 (성수기 20퍼센트 할인)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우수자원 봉사자증을 소지한자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40퍼센트 할인 (성수기 30퍼센트 할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어린이”는 초등학생 또는 <u>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u> 사람을 말한다.</p> <p>2. “청소년 및 군인”은 <u>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인</u> 사람과 <u>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 의무경찰과 경비교도대원, 상근 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u>을 말한다.</p> <p>3. “일반”은 <u>만 2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u> 사람을 말한다.</p> <p>4. ~ 10. (생략)</p> <p><u><신설></u></p> <p>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u>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시설은 예약을 받아 징수한다.</u></p>	<p>제3조(용어의 정의) ----- ----- -----.</p> <p>1. ----- <u>7세 이상 12세 이하</u>----- --.</p> <p>2. “<u>청소년 및 군인</u>”은 <u>13세 이상 19세 이하인</u> 사람과 <u>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부사관 이하의 사람(사회복무요원 등 포함)</u>을 말한다.</p> <p>3. ----- <u>20세 이상 64세 이하</u> ----- -----.</p> <p>4. ~ 10. (현행과 같음)</p> <p>11. “<u>숲나들e</u>”란 <u>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가 운영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인 산림휴양통합플랫폼</u>을 말한다.</p> <p>제5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u>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 홈</u></p>

<신 설>

페이지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 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 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해야 성립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신 설>

제5조의2(우선예약)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객실의 10분의 3 이상을 우선예약 대상객실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예약 대상객실은 논산시민과 산림복지진흥원에서 발급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만 우선으로 예약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3(매매·교환 등 금지)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제7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 1. 2. (생략)
-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4. ~ 7. (생략)
-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해당하는 사람

9. ~ 18. (생략)

제8조(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 1. 관내 유치원·초등·중·고등 학생 수련활동시: 숙박료의 30퍼센트.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한다.

2. (생략)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7조(입장료 면제) -----

-----.

- 1. 2. (현행과 같음)
- 3. 6세 ----- 65세 -----

- 4. ~ 7. (현행과 같음)
-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 18. (현행과 같음)

제8조(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유치원·초·중·고 학생 수련 활동시: -----

-----.

2. (현행과 같음)

3. 논산시 명예시민 또는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명예시민증이나
사이버 시민증을 제시한 사람
및 자매결연도시·우호교류도
시 주민: 숙박료의 20퍼센트. 다
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15퍼
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
한다.

4.·5. (생략)

6.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우수자원
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숙박료
의 3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

제9조(입장료 감면) ①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둔 시민(신분증 제시
자에 한함)은 입장료의 50퍼센트
를 감면한다.

②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제시 자에 한함)은 입장료 50퍼센
트를 감면한다.

③ (생략)

<신설>

3.-----
----- 명예시민증-----

-----.

4.·5. (현행과 같음)

6.-----

----- 40
퍼센트.-----
----- 30퍼센트-----
-----.

제9조(입장료 감면) ① -----
----- 제
시자-----
-----.

② -----
제시자-----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관리자 예약) 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예비 숙박시설 외에
도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숲나

제15조(준용규정)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5조(준용규정) 시설사용료 -----

-----.

현 행

[별표 2] 시설 사용 요금 표(제4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사용 시간	요 금		비 고
			성수기	비수기	
주차료	소·중형자동차 (승용, 봉고차, 1톤이하 화물트럭)	1대/ 1일	2,000		시설물 이용자는 주차료 무료
	대형차량 (버스, 화물트럭)		4,000		
술속의집 (일반)	26㎡(4인용)	1동/ 1일	75,000	50,000	※ 사용시간 당일 15:00 ~ 익일 오전 12:00
	29㎡(4인용)		75,000	50,000	
	36㎡(6인용)		120,000	80,000	
	60㎡(10인용)		160,000	100,000	
	74㎡(12인용)		200,000	140,000	
술속의집 (프리미엄)	106㎡(10인용)	1동/ 1일	250,000	180,000	※ 정원 초과시 1인당 5,000원 추가징수
	150㎡(15인용)		300,000	230,000	
술속의집 속 휴 양 관	34㎡(5인용)		90,000	60,000	
다용도실	20인실	4시간 8시간	50,000		1실
			100,000		
세미나실	50인실	4시간 8시간	100,000		1실
			200,000		
야외무대	공연장포함	1조/ 1일	50,000		
클럽평장	4인용	1동/ 1일	130,000	100,000	※ 사용시간 당일 15:00 ~ 익일 오전 12:00
숙박요금 감면 (술속의집, 술속휴양관, 클럽평장)	논산시민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30퍼센트 할인 (성수기 20퍼센트 할인)		
	사이버 논산시민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20퍼센트 할인 (성수기 15퍼센트 할인)		
	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도시주민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20퍼센트 할인 (성수기 15퍼센트 할인)		
	관내 유치원· 초·중·고·대학생 수련활동		숙박료의 30퍼센트 할인 (성수기 20퍼센트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30퍼센트 할인 (성수기 20퍼센트 할인)		
	다자녀가정 구성원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30퍼센트 할인 (성수기 20퍼센트 할인)		

개 정 안

[별표 2] 시설 사용 요금 표(제4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사용 시간	요 금		비 고
			성수기	비수기	
주차료	소·중형자동차 (승용, 봉고차, 1톤이하 화물트럭)	1대/ 1일	2,000		시설물 이용자는 주차료 무료
	대형차량 (버스, 화물트럭)		4,000		
술속의집 (일반)	26㎡(4인용)	1동/ 1일	75,000	50,000	※ 사용시간 당일 15:00 ~ 익일 오전 12:00
	29㎡(4인용)		75,000	50,000	
	36㎡(6인용)		120,000	80,000	
	60㎡(10인용)		160,000	100,000	
술속의집 (프리미엄)	106㎡(10인용)	1동/ 1일	250,000	180,000	※ 정원 초과시 1인당 5,000원 추가징수
	150㎡(15인용)		300,000	230,000	
술속의집 속 휴 양 관	34㎡(5인용)		90,000	60,000	
다용도실	20인실	4시간	50,000		1실
		8시간	100,000		
세미나실	50인실	4시간	100,000		1실
		8시간	200,000		
야외무대	공연장포함	1조/ 1일	50,000		
클럽평장	4인용	1동/ 1일	130,000	100,000	※ 사용시간 당일 15:00 ~ 익일 오전 12:00
숙박요금 감면 (술속의집, 술속휴양관, 클럽평장)	논산시민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30퍼센트 할인 (성수기 20퍼센트 할인)		
	사이버 논산시민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20퍼센트 할인 (성수기 15퍼센트 할인)		
	자매결연도시· 우호교류도시주민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20퍼센트 할인 (성수기 15퍼센트 할인)		
	관내 유치원· 초·중·고·대학생 수련활동		숙박료의 30퍼센트 할인 (성수기 20퍼센트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30퍼센트 할인 (성수기 20퍼센트 할인)		
	다자녀가정 구성원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30퍼센트 할인 (성수기 20퍼센트 할인)		
	[논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증을 소지한자 (1인 1실(동)한함)		숙박료의 40퍼센트 할인 (성수기 30퍼센트 할인)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비용추계결과**가. 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추계결과

- 해당없음

3. 작성자

산림공원과장 김 종 진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논 산 시

시민행복, 시대를
명예롭게

수신 산림공원과장
(경유)

제목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요청

1. 2022년 의회 행정사무 감사 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 등 무대방안 검토 요청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정 요청서 1부, 끝.

주민생활지원과장 근

주무관	포미경	복지지원관리	팀장	유지영	주민생활지원	2023. 4. 19.	과장	포용근
첨조자								
사행	주민생활지원과-9716	(2023. 4. 19.)	접수	산림공원과-6987	(2023. 4. 20.)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주민생활지원과 (내동)	/	www.nonsan.go.kr				
전화번호	041-746-5272	팩스번호	041-746-5279	/	jo030321@korea.kr	/	비공개(5)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하세요!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요청

- ※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율을 높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I 근거 및 검토 배경

○ 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8조
(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 검토배경

- 현재 우수자원봉사자 시설사용료 감면율이 논산 시민과 동일하여 실효성이 떨어짐
- 2022년 의회 행정사무 감사 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 등 우대방안 검토 요청

II 우수자원봉사자 현황

○ 기준 : 자원봉사활동 누적 100시간 이상인 자

○ 우수자원봉사자 수 : 6,500명 (기준 : 2023. 3. 31. / 단위 : 명)

III 조례 개정 의견 및 개정(안)

○ **규칙안 개정 의견 :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 (현행 30% → 개정 50%)**

-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 제6호 개정
- 다른 조례의 개정 :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 제4호 개정

○ **규칙 개정(안)**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6호의 ‘숙박료의 30퍼센트’를 ‘숙박료의 50퍼센트’로 한다.

부칙(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4호중 “30%감면”을 “50%감면”으로 한다.

IV 관련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논산시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시장은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누적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2. 논산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100%면제
3. 논산국민체육센터 및 강경실내수영장 이용료 20%감면
4.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시설사용료 30%감면**

□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현행)

제8조(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관내 유치원·초등·중·고등학생 수련활동시:숙박료의 3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한다.
2. 논산시민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숙박료의 3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
3. 논산시 명예시민 또는 사이버 논산시민으로 명예시민증이나 사이버 시민증을 제시한 사람 및 자매결연도시·우호교류도시 주민:숙박료의 2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15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
4.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숙박료의 3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숙박료의 3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
6.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숙박료의 30퍼센트. 다만,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퍼센트로 하고, 1인 1실(동)에 한한다.**

지역사랑의 첫 걸음은 "내 고향, 내 직장 주소 찾기"부터 시작입니다.



충 청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감사원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공립자연휴양림 관련 조례 개정
권고 알림

1. 관련문서

- 가. 산림휴양등산과-253(2019.1.15.)호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알림"
- 나. 감사원 전략감사단2과-153(2022.8.25.)호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 다. 산림휴양등산과-3414(2022.9.5)호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및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의견조회"
- 라. 산림휴양등산과-3602(2022.9.20)호 감사원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공립자연휴양림 관련 조례 개정 권고"

- 2. 산림청에서 2022년 감사원의 "공공앱 구축·운영실태(숲나들e 포함)" 감사결과에 후속조치로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의견조회(9.6.~9.14.)를 거쳐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요약)>

공립자연휴양림 예약담당자가 숲나들e 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부당예약을 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조례 등에 관리자 예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관리자 예약 시 사유를 등록하여 내부승인절차를 받게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

- 3. 이에 공립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된 조례의 개정을 권고하오니, <붙임 1>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각 지자체별 관련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참고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으로 휴양림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선예약 방법 등을 강구하여 조례 개정 시 반영(사용료는 충남도에서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 5. 아울러 감사원 감사결과 처리전말보고 등을 위해 **공립자연휴양림별 조례개정 계획을 요청**하오니 **<붙임 2 서식>에 따라 2022.9.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안(확정) 1부.
2. 공립자연휴양림 조례개정 계획(서식) 1부, 끝.

충청남도지사



수신자 천안시장(산림휴양과장), 공주시장(시설관리사업소장), 보령시장(산림공원과장), 아산시장(산림과장), 서산시
 장(산림공원과장), 논산시장(산림공원과장), 계룡시장(농림과장), 당진시장(산림복지과장), 금산군수(산림복지
 과장), 부여군수(산림복지과장), 서천군 공공시설사업소장,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성군수(산림복지과
 장), 예산군수(산림복지과장), 태안군수(환경산림과장),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관리과장), 충청남도산림
 자원연구소태안사무소장,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보령사무소장

주무관 **이도형** 산림복지팀장 **고대열** 산림자원과장 **이상훈** 전권 2022. 9. 22.
 협조자 주무관 **최리윤** 주무관 **서술기**
 시행 산림자원과-19257 (2022. 9. 22.) 접수 산림공원과-202 (2022. 9. 22.)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목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산림자원 / http://www.chungnam.go.kr
 과
 전화번호 041-635-4511 팩스번호 041-635-3067 / ldh9433@korea.kr / 대국민 공개

청렴이란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우리의 약속입니다.